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1/2)

THE **EST**

춘천 | 동문 디 이스트

어 반 포 레

■ 청약 일정

구분	신청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5.08.04.(월)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건본주택 방문 청약(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59	84A	84B	84C	84D	합계
신혼부부	8	95	15	6	6	130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자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청약이 가능																		
청약자격요건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0호(2025.03.31)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자녀수 ▶ ⑤ 추첨 <table><tr><th>선정순서</th><th>소득기준</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td></tr><tr><td>3단계</td><td>신혼부부 우선공급(35%)</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td></tr><tr><td>4단계</td><td>신혼부부 일반공급(15%)</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선정순서	소득기준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	3단계	신혼부부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	4단계	신혼부부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순서	소득기준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																	
3단계	신혼부부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00% 이하)																	
4단계	신혼부부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 140% 이하)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유의사항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고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단, 청약신청자(본인 기준 1회, 혼인특례 적용) 및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은 배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단, 부부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모두 당첨된 경우 신청 접수일시(분단위)가 빠른 당첨권(접수일시가 같으면 연령(연월일 계산)이 유효하고 늦은 당첨권은 무효처리함. -청약신청자 본인은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함.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작물은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접수 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2/2)

THE **EST**

춘천 | 동문 디 이스트

어 반 포 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소득 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중한명만 소득이있는경우	100%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모두 소득이있는경우	100%초과 120%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중한명만 소득이있는경우	100%초과 140%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모두 소득이있는경우	120%초과 160%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중한명만 소득이있는경우	140%초과하나, 부동산가액총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모두 소득이있는경우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9인이상가구소득기준 8인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평균소득(702038)×(N-8))*N→9인이상가구원수

※(가구원수산정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으로산정.단임신증인태아는태아수만큼인정하되,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1년이상계속하여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만포함

※(월평균소득산정대상)가구원수에포함되는가구원중만19세이상인성년자(세대주인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포함)단세대의원의실종등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대상에서제외

※(월평균소득)소득산정대상자별월평균소득을합산한금액,근로자의경우에는비과세소득이제외된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총급여액(21번)및소득금액증명상의지급받은총액(수입금액)을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근로월수)으로나누어산정하고,사업자인경우에는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본상소득금액을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기간)으로나누어산정

※소득산정은청약신청자의상황(계속적인근로자또는사업자,신규취업자,이직자,신규사업자,프리랜서등)에따라산정방식이달리적용되므로본인의상황을"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발간)"를확인하여야하며,소득증빙자료가제출되지않으면부적격처리또는계약포기기간주될수있으니반드시본인의자격요건및증빙서류를확인한후청약하시기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건축물의지방세정시기표준액으로하되없는경우지자체장이결정한시기표준액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의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면적율을곱한금액 ※단아래경우는제외 -「농지법」제2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구·읍·면의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같은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초지법」제2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측산법」제22조에따른측산업하기를받은사람이며측산업하기중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포함)또는문화재가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처분등이금지되거나제한지제한을받는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건축물가액에토지가액이포함되지않는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기준)	

※ 본 제작물은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바라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접수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